

- 대통령령 제15903호(1998. 10. 1)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 근거에 의거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
- 안 제3조의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 지정함은 군정규모 및 여타 각종 위원회조례와 형평성에 적정치 않을 것 같으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안 제3조의 구성인원 50명이내로 명시한 것은 수당 등 제경비 예산이 과다 소요되며, 행정자치부(경상남도)지침('98.10.28)에 의하면 인구 30만 미만은 25인 이내로 조정토록 하였는데 50명 이내로 명시한 근거는
- 답 : 학식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며,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고 시군 실국과장 지침시달 회의시 군부에서는 공히 50인이내로 구성키로 합의 조정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11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